

「임실군의회 모범공무원 표창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게재하여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2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12. 1.

임실군의회 의장



임실군의회 모범공무원 표창규칙안

1. 제안이유

가. 「지방자치법」 제103조에 따라, 2022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의회의 의장이 처리하여야 함.

나. 임실군의회 모범공무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규칙의 목적(안 제1조)

나. 모범공무원 표창 대상(안 제2조)

다. 모범공무원 표창 방법 및 절차(안 제3조~ 안 제4조)

라. 모범공무원 표창시기 및 인원(안 제5조)

마. 모범공무원 표창자 우대(안 제6조)

바. 모범공무원에 대한 상여금 지급(안 제7조)

사. 모범공무원에 대한 상여금증서 교부(안 제8조)

아. 모범공무원 상여금 지급 중지(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모범공무원 규정」 등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심사예고 : 5일

라. 비용추계: 비대상

4. 의견제출

이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임실군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 주소: 임실군 임실읍 수정로 30(이도리), 우편번호: 55927, 전화: 063)640-2883, FAX: 063)640-2169, E-mail: jh030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임실군의회 모범공무원 표창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임실군의회 포상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 대상공무원 중 그 공적이 특수한 모범공무원에 대하여 상여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창대상) 임실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1. 의회 발전에 공헌이 뚜렷한 자
2. 행정실적을 현저히 거양한 자
3. 창의, 제안으로 의정 발전에 공헌한 자

제3조(표창방법) 표창은 상패를 주되, 「임실군의회 포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표창절차)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표창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의회사무과장은 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붙여 표창예정일 15일전에 임실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상신한다.

② 표창은 임실군의회 포상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여해야 한다.

제5조(표창시기 및 인원) 표창은 매년 12월말에 시행하고, 표창인원은 연 1인으로 한다.

제6조(표창자 우대) 이 규칙에 의해 표창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우대한다.

1. 상급 기관의 표창에 우선추천
2. 승진서열 5배수 내에서 우선 승진
3. 선진지 견학자로 우선선발

제7조(상여금 지급) ① 이 규칙에 의하여 표창을 받은 자는 상여금을 지급한다.

② 상여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모범공무원규정」 제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정한 수당액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 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③ 상여금의 지급일은 매달 당해 공무원의 봉급지급일로 한다.

제8조(상여금증서 교부) 상여금의 지급을 받는 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여금증서를 교부한다.

제9조(상여금지급의 중지 등) ① 상여금을 받고 있는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상여금의 지급을 중지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 해제된 때
4. 기타 모범공무원으로서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상여금의 계속지급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된 때

②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상여금의 지급을 중지하는 때에는 의장은 그 사실을 관계부서에 지시하고 본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0조(상여금의 소급지급)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상여금의 지급이 중지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이 취소되거나 다시 직위를 부여받은 때에는 그 지급이 중지된 기간의 상여금의 전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 호

상 여 금 증 서

소 속 :

직성명 :

위 사람은 20 년도 모범공무원으로 「임실군의회 모범공무원 표창 규칙」에 따라 이 증서를 수여함.

지 급 액 : 금 원

20 년 월 일부터
지급기간
20 년 월 일까지

20 년 월 일

임실군의회 의장

임실군의회 모범공무원 표창규칙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제7조 상여금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 「임실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4. 작성자 : 임실군의회 신대용의원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 모범공무원규정

제2조(선발대상) ① 제1조에 따른 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은 일반직 6급 이하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선발한다.
② 모범공무원으로 이미 선발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다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없다.

제8조의2(모범공무원 수당) ①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5만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을 지급하되,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년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퇴직하거나 면직되었을 때
2.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
3. 직위해제처분을 받았을 때

② 휴직한 공무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기간 중 모범공무원 수당을 지급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

나.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모범공무원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나머지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

나.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

다.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제8호부터 제11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제3항